
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203호, 2009. 7. 24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작물에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하여 농산물 중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의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입안예고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

- (1) 디메토모르프 (Dimethomorph)
: 포도(머루포함) 2.0 ppm
- (2) 아зок시스트로빈 (Azoxystrobin)
: 대추 2.0 ppm
- (3) 플루킨코나졸 (Fluquinconazole)
: 석류 0.5, 호박 0.5 ppm

- (1) 인삼 중 시메코나졸(수삼, 건산포함 : 0.7ppm) 및 아미설프롬(수삼, 건산포함 : 0.3ppm)에 대한 기준 신설 및 농산물 중 글루포시네이트 등 51종(내용 생략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나. 인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

「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」 제정고시(안) 입안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206호, 2009. 7. 28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등의 제조·가공·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 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「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」 제정고시(안)을 입안예고 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가. 목적 :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 등의 제조·가공·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

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맞춤형 위생수준 안전평가 기준 마련 추진